- 2020년 11월~12월 -여객자동차 신규채용자 집합교육 일정 안내

□ 교육개요

교육과정	업 종	교육시간	교 육 대 상
여객자동차 신규채용자교육	버스(시내·전세) 택시(법인·개인)	2일 (16시간)	-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체에 신규 채용되어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인 운수종사자 (단, 퇴사 후 2년 이내 재취업자 제외) - 신규 모범택시 인가자 포함

□ 교육일정

구 분	교육일자	비고
11월	05일 ~ 06일 09일 ~ 10일 19일 ~ 20일 26일 ~ 27일	 ■ 교육비 : 인천업체 35,000원 ■ 타 시·도 업체 교육 불가 ■ 미취업자 교육 불가
12월	03일 ~ 04일 08일 ~ 09일	■ <u>인터넷 사전예약 필수</u>

□ 접수방법 : 인터넷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

○ 예약방법 : 인천교통연수원 홈페이지(www.int.or.kr) ※ 전화예약 불가

○ 예약기간

- 11월 교육 : 10. 27(화) 09:00 ~ - 12월 교육 : 11. 16(월) 09:00 ~

○ 접수인원 : <u>기수별 선착순 100명 제한</u>○ 접수시간 : 교육시작일 08:10 ~ 08:50

□ 준 비 물 : 신분증, 운전자격증(버스, 택시), 교육비

○ 교육비 : 인천업체 35,000원(신용카드 가능)

□ 교육대상 관련사항

- 신규채용자 교육대상(미취업자 교육 불가)
 - 여객자동차(법인택시, 개인택시, 시내버스, 전세버스) 운송사업체에 처음으로 취업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(운전업무 시작 전) 하는 자
 - 여객자동차(법인택시, 개인택시, 시내버스, 전세버스)를 운전하다가 퇴사 후 2년이 경과된 자
 - ※ 정식등록기사가 아닌 경우(스페어기사 등)도 신규채용자 교육 대상
 - 개인 모범택시 신규 인가자 (모범택시 인가조건 교육)
 - 개인택시 사업면허 신규 취득자 (신규 인가조건 교육)

○ 신규채용자 교육 면제 대상

- 여객운송사업체에 취업하여 신규채용자 교육이수 후 여객자동차 (법인 택시, 개인택시, 시내버스, 전세버스)를 운전하다가 **퇴사 후 2년 이내**에 **재취업한 경우 면제**
- **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경력** 및 일반(법인업체, 공무원 운전기사 등) 운전 경력은 면제대상 경력에 **해당사항 없음**

○ 유의사항

- 신규채용자 교육을 이수한 당해 연도에는 보수교육이 면제되며 다음 해 부터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
- 여객운송사업체에서는 신규채용자교육 확인(이수증 사본 또는 교육 확인서) 및 여객자동차 운전경력(경력증명서) 등을 확인하여 신규채용자 교육대상 여부 판단

□ 기타사항

○ 주차가 매우 혼잡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주차장 혼잡으로 도로변 주차 시 <u>불법주차단속 대상</u>이며, 이에 대하여 교통연수원은 일체 책임지지 않음)